# 2025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(ODA) 공고

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거, 2025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(ODA,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)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본 공고문과 첨부 양식\*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> 2025. 3. 11. 산업통상자원부장관

\* 첨부 양식은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 "공모사업찾기" 내 해당사업 공고,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kiat.or.kr) 알림마당의 해당 "사업공고" 참조

## 사업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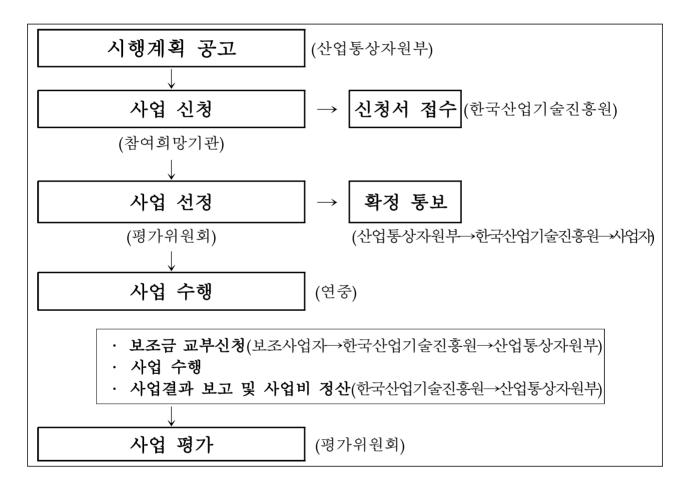
### 1. 사업 목적

개도국의 산업개발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개도국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시설, 기자재, 기술협력, 컨설팅 등 개발협력(ODA)을 지원하고, 이와 연계하여 국내 산업 및 에너지 관련 기업의 신흥시장진출,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

#### 2. 사업 내용

- 지원분야 : 프로젝트, 사후관리,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(TASK)
  - \* TASK: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
- ㅇ 지원기간 및 규모 : 사업별 상이

#### 3. 추진체계



#### 4. 근거 규정

- ㅇ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동법 시행령
-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
- ㅇ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
  - \*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 근거 규정에 따라 처리함

### 1 지원 분야

#### 1.1. 프로젝트

- (개요) 협력 대상국의 산업 및 에너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산업 발전 및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·장치·시스템 구축, 노하우 전수,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ODA 사업 수행
  - (프로젝트) 정부간 합의된 프로젝트 구현에 필요한 ①건축물· 기자재·시스템 구축,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사업 수행, ②양국 협력채널 구축 및 운영 지원, ③사업 실적 및 성과관리, ④사후 성과관리 및 안정화 지원
  - (**사후관리**) 종료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, 기존에 미흡했던 프로젝트 사후관리
- ㅇ (지원대상) '우즈베키스탄 디지털제조기술센터 건립' 등 프로젝트 3건

No	구분	공고명	비고
1	프로	우즈베키스탄 디지털제조기술센터 건립	
2	젝트	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조성	산업 통상협력
3	사후 관리	라오스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후관리	개발지원

- \* 세부내용은 「붙임1. 프로젝트별 타당성조사보고서」 참조
- \* 사후관리는 旣기축된 프로젝트 타당성조사보고서, 화재사고 원인분석보고서, 과업지시보고서 등 참조

### 1.2.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(TASK)

- o (개요) 개발도상국 현지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기술 지도 프로그램을 설계·지원하고, 이와 연계하여 국내기업의 현지 판로개척 연계 추진
  - 전문가 그룹의 현지 기업 방문을 통해 현지기업의 역량을 정밀 진단하고, 공정 효율화, 품질 향상 등을 통한 종합적인 기술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
    - \* TASK :  $\underline{T}$ echnology  $\underline{A}$ dvice and  $\underline{S}$ olutions from  $\underline{K}$ orea

#### [ TASK 추진 프로세스 ]

1단계 사업 착수	
·후보기업 발굴 ·대상기업 확정 (1차(서류)→ 2차 (현장))심사	$\Rightarrow$

	2단계
	역량진단
	· 현장 진단 (인터뷰, 생산라인 점검 등)
>	· 종합 진단보고서
	· 맞춤형 기술지도 지원 계획 수립

	3단계 기술지도
$\Rightarrow$	· 맞춤형 기술 지도 지원 (기업별 연4회 내외) · 국내 산업시찰 (총 사업기간 동안 1회)

	4단계
	성과 점검
	· 개선효과 모니터링
$\Rightarrow$	(만족도 조사, 개선 효과, 국내기업 현 지진출 연계 여부 등 정량적 성과 등)

(지원 대상) 섬유 및 전자전기의 2개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별 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

#### [ 지원분야 및 대상 국가 ]

지원분야	섬유 분야	전자전기 분야
대상국가	스리랑카 1개국	베트남 1개국

### 2 지원 규모

#### 2.1. 개요

지원규모는 기존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고되었으며, 정부 정책방향 및 예산, 협력국의 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

#### 2.2. 분야별 지원규모

ㅇ 프로젝트

(단위: 백만원)

#	고그며	지원	총	
#	공고명	총 규모	당해연도(′25)	사업기간
1	우즈베키스탄 디지털제조기술센터 건립	12,040	433	′25~′29
2	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조성	16,596	535	′25~′29
3	라오스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후관리	370	360	′25~′26

- \* 연차별 지원규모는 정부 예산심의 및 평가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
  -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(TASK)

(단위: 백만원)

#	고그며	지원규모 <sup>*</sup>		총
#	공고명 	총 규모	당해연도('25)	사업기간
1	스리랑카 섬유분야 생산기업 현장애로기술지도(TASK)	1,995	274	′25~′29
2	베트남 전자전기분야 생산기업 현장애로기술지도(TASK)	1,880	269	′25~′29

\* 연차별 지원규모는 정부 예산심의 및 평가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

#### 2.3. 지원 분야별 인건비 책정 비중

지원 분야	수행기관 유형	인건비 비중 (인건비/수행기관 사업비)	
프로젝트	기업	총사업비(해당연도 사업비)의 10% 이내	
프도젝트	기업 外	총사업비(해당연도 사업비)의 20% 이내	
개도국 생산현장		게취 어 O	
애로기술지도(TASK)		제한없음	

- \* 인건비 비중은 연차별. 수행기관별로 각각 기준을 충족 필요
- \* 불가피한 사유로 인건비 비중 변경이 필요시. 사유 및 산출 근거를 함께 제시 필요

## 3 지원 대상 (신청자격)

#### 3.1. 프로젝트

- o 해당 국가 부처(기관)와의 협력 네트워크, 관련 분야 전문성, 개발협력 성과관리 역량 등 보유 기관(기업, 대학, 연구소, 협단체 등)
- 주관기관은 해당 산업분야에 속한 정부출연구기관,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및 기타 협·단체 등 비영리기관
  - \* 주관기관 :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8조에 의거한 연구기관, 그 밖에 기관·단체 등
  - 단, 당해연도 **사후관리 사업\***은 종료사업의 신속한 원인분석, 해결방안 수립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영리기관(기업)의 주관기관 신청 및 수행가능
  - \* 사후관리 사업: 라오스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후관리('25~'26)

- 단독 지원 또는 '기업, 협·단체, 공공기관, 연구기관'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
- "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"제2장 제8조(주관기관),
   제9조(참여기관) 및 제10조(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) 요건을
   충족하는 기관 및 개인

### 3.2.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(TASK)

- o 해당 국가(협력기관)와의 협력 네트워크, 관련 분야 전문성, 개발 협력 성과관리 역량 등 보유 기관
- 해당 산업분야에 속한 정부출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기타 협·단체 등 비영리기관 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사업 참여
  - \*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국내기업(영리기관)은 선정된 수행기관에서 추진하는 별도의 공모 절차를 통해 기술전문가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 가능
- < "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" 제2장 제8조, 제9조, 제10조 >

제8조(주관기관)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- 1.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
- 2.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
- 3.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의 부담
- 4.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,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
- 5. 참여기관) 수행 내용에 대한 중간점검 등 사업계획 대비 진도 점검 및 성과 관리
- 6.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
- 7. 정보공시, 감사보고서 제출, 중요재산 관리 및 보고
- 8.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
- 9.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보고서 등 제출
- 10. 연구윤리 준수
- 11. 사업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관련 자료의 제공
- 12. 부정수급, 사업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보고, 간접보조금 환수 및 반환 등
- 13. 참여기관, 보조금수령자 등의 보조금 법령 등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
- ② 주관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, 보고서의 저작권 등의 귀속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한 사업협약내용을 따른다.

- ③ 주관기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.
- ④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#### 제9조(참여기관) ①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- 1. 수행사업의 공동 참여 및 협력
- 2.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
- 3.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의 부담
- 4.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,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
- 5. 주관기관의 진도점검 및 성과 관리 등과 관련된 협조 요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
- 6. 사업비의 관리, 사용실적의 보고 및 지원
- 7. 정보공시, 감사보고서 제출, 중요재산 관리 및 보고
- 8. 주관기관의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협력 및 지원
- 9. 사업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관련 자료의 제공
- 10. 부정수급, 사업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보고, 간접보조금 환수 및 반환 등
- ② 참여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, 보고서의 저작권 등의 귀속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협약 내용을 따른다.
- ③ 참여기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 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.
- ④ 참여기관의 장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보고, 제출 및 반환 등은 주관기관을 통하여 전담기관에게 실시한다.

# **제10조(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)** ①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(이하 "총괄책임자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- 1.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
- 2.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
-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- 1. 사업계획서의 작성
- 2. 사업비의 사용 발의, 관리 및 집행
- 3.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
- 4. 수행사업의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, 사후관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
- 5. 사업수행 결과의 사후관리 등
- 6. 장비의 활용,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
- 7. 성과전시회 및 완료사업 발표회 참가
- ③ 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.
- 1. 총괄책임자가 협력대상국이 아닌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: 협약기간의 1/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. 단,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
- 2.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국내 외 기관에 파견(교육훈련, 출장, 연수 등을 포함한다)하려는 경우: 협약기간의 1/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. 단, 두 기 가 중 짧은 기가 적용
- 3.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④ 참여기관 책임자는 해당 참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, 제3 항과 같은 경우에 전담기관의 장에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#### 4 지원제외 조건

- o 공고 마감일 기준 "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" 제4장 제16조(사업의 신청) 제2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  - < "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" 제4장 제16조(사업의 신청) 제2항 >
- 제16조(사업의 신청)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동시에 수행하는 협력개발지원사업이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, 이 중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협력개발지원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반영하지 않는다.
  - 1.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
  - 2. 사전조사, 기획 및 평가연구 등에 관한 과제
  - 3. 기타 특정 사업자가 보유하는 고유한 기술이 다수의 협력대상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장관이 관계부처 및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인정한 사업
- 공고 마감일 기준 "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"[별표1]에 명시된 사전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

#### < "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" [별표1]

- ① 공고내용 및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
- 사업의 목적이나 공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② 기지원 사업과의 유사성
  - 신청과제가 기지원된 사업과 차별화되지 않거나 신청기관이 기 수행한 사업 내용과 유사한 경우
- 다만,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으며,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
-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  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협력개발지원사업과 관련한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
- ④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-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, 수행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. 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구분		사전지원제외
	1.	기업의 부도
	2.	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
		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
		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	3.	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
		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
		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
		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	4.	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
		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
검토	5.	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
기준		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.)인 기업 또는 유동
		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
		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
		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
		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.) 이때,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
		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		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
		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		※ 상기의 신용등급 'BBB'에는 'BBB+', 'BBB', 'BBB−'를 모두 포함함
		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	7.	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
-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
- ⑥ 과학기술기본법,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
- ⑦ 수행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「보조금법」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
-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
-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
- ⑧ 기타 공고시 정한 결격 요건에 해당하거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
###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

### 1 지원절차 및 일정

구분	일시	비고
	2025년 3월 11일(화)	산업통상자원부 / 한국산업기술진흥원 /
공고 개시		e나라도움
0포 개시		(www.motie.go.kr / www.kiat.or.kr /
		www.gosims.go.kr)
	2025년 4월 10일(목) (15:00)	ㅇ 제출자료 일체 온라인 제출
공고 마감		* 15시 이후 시스템상 접근 및 등록 불가
		* 오프라인 제출 없음
선정 평가	2025년 4월 중	o 선정평가 안내: e나라도움 상
ଅଟି ଟମ	2023년 4월 중	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통보
 사업 수행	협약체결일로부터	
<u> </u>	사업종료시까지	

\*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

### 2 신청 요령

- o e나라도움 (www.gosims.go.kr)을 통해 접수공고마감시까지 관련 서류 업로드 및 온라인 접수 완료 필수
  - \* 온라인 상 제출서류 일부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
#### < 제출 서류 목록 >

- ① 사업계획서 1부
- ②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(붙임 4-2. 서식 제1호-1)
- ③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(붙임 4-2. 서식 제1호-2)
- ④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(붙임 4-2. 서식 제1호-3)
- ⑤ 법인(신용) 정보 조회 동의서(붙임 4-2. 서식 제1호-4)
- ⑥ 수행기관(주관·참여기관) 사업자등록증 각 1부 (기관별 제출)
- ⑦ 최근 3년간 수행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(기업만 제출)

#### < 온라인 접수 안내 >

- ① **(회원가입)**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(주관 및 참여)이 e나라도움 (www. gosims.go.kr)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
  - ※ 사업에 참여하려는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 모두 가입/등록 필요
- ② (e나라도움 등록) e나라도움에서 동 공모 검색 후, 제안사항의 내용 일부 기입
  - ※ e나라도움 "공모사업 찾기"를 통해 공모명 검색-'공모신청바로가기'
  - ※ 사업명의 경우, 다음과 같이 입력 권고
    - 프로젝트 : '공고명 주관기관명'으로 입력
  - ※ 컨소시엄 구성인 경우, 사업정보 등록단계에서, '신청기관정보내역' 작성시 '주사업자여부'에서 주관기관->주사업자 / 참여기관->컨소사업자로 구분 하여 등록 및 저장
  - ※ 연락처의 경우, 평가일정 등 주요내용을 전달받을 사람의 정보로 기입
- ③ (파일 업로드) 공고상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(사업계획서 등)을 작성한 후, 해당 파일 일체를 e나라도움 상에 업로드
- ④ (제출완료 확인) '사업수행관리-신청관리-사업신청관리-사업신청현황'에서 진행상태가 '제출' 인 경우 정상적으로 제출완료 된 것

상기 이외의 경우, 이나라 도움 콜센터(1670-9595)로 전화하여 문의

# 3 선정 방식

- o 평가방법 :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 위원회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
- ㅇ 평가지표 : 지원분야별 상이

#### [ 프로젝트 평가지표 ]

[ 프로젝트 평가시표 ]				
평가	항목	세부 평가기준		
사전 조사의 충실도 (5)		<ul> <li>수원국 및 사업 관계기관에 대한 이해도</li> <li>* 관련 법규, 정책적 환경, 정부 조직체계, 문화, 기술적 수준 등</li> <li>사업 내용의 사전 이해도</li> <li>* RFP(제안요청서) 이해도 및 사업 추진상의 예상 이슈 도출 충실도</li> </ul>		
PDM	PDM 설정 적정성(5)	o 사업목적 및 성과 목표에 대한 이해도 o 성과, 산출물 설정 및 측정 지표 설정의 적정성 * 성과, 산출물의 타당성, 측정 지표의 명확성(증빙자료 신뢰성) 여부		
신뢰성 (15)	PDM 실현 가능성(10)	o 제시된 PDM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* PDM에 기반한 성과관리, 일정, 예산 등이 유기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o 활동 및 투입 요소의 명확성 및 적절성 o 수원국 및 관련 기업의 현지 진출/수주 기여도 명확성		
	수행체계 적절성(10)	o 컨소시엄 구성 및 투입 규모, 역할 분담의 적절성 * 컨소시엄의 과업 수행 완결성, 수행기관 변경시 백업 방안 제시 여부		
	총괄책임자 (PM) 전문성(5)	o 총괄책임자(PM)의 과제수행 전문성 * ODA 전문지식, 해당 분야 기술적 전문성, 의사소통 능력 등 여부 o 수원국과의 협상력 및 컨소시엄 관리 리더십 보유 여부		
사업 수행역량 (30)	수행기관/ 인력 역량(10)	o 수행 체계(컨소시엄 등 수행기관)의 해당 분야 기술적 전문성 및 수행 경험, 리스크 관리역량 등 * 유사 ODA사업 수행 경험 보유 여부, 해당 분야 기술 개발 경험 및 노하우 보유 여부, 현지어 구사 능력(전담 통역 인력 보유) 여부 등 o 수행 인력의 기술적 전문성 및 참여 규모의 적절성 * 전문 자격증 보유, 과업 대비 참여 인력 규모, 참여율의 적절성 여부		
	네트워크 관리역량(5)	o 수원국/국내 관련 기업, 협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및 현지 법인 보유 여부, 네트워크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		
	사업관리 적절성(20)	<ul><li>발생가능한 리스크 분석 및 대응계획의 실현 가능성</li><li>사업 운영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</li><li>예산집행 계획, 성과관리 방안의 적절성</li></ul>		
사업 세부 이행 방안 (45)	추진 계획 타당성(20)	<ul> <li>아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유기적 연계 여부</li> <li>* (단계별 일정 예시) 건축(리모델링) → 기자재 지원 → 현지 교육훈련 등</li> <li>이 건축물·기자재·시스템 구축, 교육훈련, 성과홍보, 안전관리 등세부 실행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</li> </ul>		
	성과관리 적정성(5)	o 사후 관리체계 구축, 안정화 지원 등의 구체성 및 타당성 * 수원국의 지속 가능한 사후 운영 가능성, 소모품 등 현지 조달 방안 등		
예산편성의 적정성 (5)		o 사업 목표 달성 및 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* 세부 운영 프로그램 간 예산편성 비중의 적정성 여부 o 소요 예산 산출 근거의 구체성 및 현실성 * 현지 물가 및 실정을 고려한 예산편성 여부 (예산 산출근거 증빙)		

<sup>\*</sup> 제시된 평가지표 및 배점, 항목은 추후 변동 가능

# [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(TASK) 평가지표 ]

평가항목		세부 평가기준		
사전 조사의 충실도 (10)		O 수원국 및 사업 관계기관에 대한 이해도 * 관련 법규, 정책적 환경, 정부 조직체계, 문화, 기술적 수준 등 O 사업 내용의 사전 이해도 * RFP(제안요청서) 이해도 및 사업 추진상의 예상 이슈 도출 충실도		
PDM 신뢰성 (10)	PDM 설정 적정성(5)	o 사업목적 및 성과 목표에 대한 이해도 o 성과, 산출물 설정 및 측정 지표 설정의 적정성 * 성과, 산출물의 타당성, 측정 지표의 명확성(증빙자료 신뢰성) 여부		
	PDM 실현 가능성(5)	o 제시된 PDM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* PDM에 기반한 성과관리, 일정, 예산 등이 유기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o 활동 및 투입 요소의 명확성 및 적절성 o 수원국 및 관련 기업의 현지 진출/수주 기여도 명확성		
사업 수행역량 (30)	수행체계 적절성(10)	o 컨소시엄 구성 및 투입 규모, 역할 분담의 적절성 * 컨소시엄의 과업 수행 완결성, 수행기관 변경시 백업 방안 제시 여부		
	추괄책임자 (PM) 전문성(5)	o 총괄책임자(PM)의 과제수행 전문성 * ODA 전문지식, 해당 분야 기술적 전문성, 의사소통 능력 등 여부 o 수원국과의 협상력 및 컨소시엄 관리 리더십 보유 여부		
	수행기관/ 인력 역량(10)	O 수행 체계(컨소시엄 등 수행기관)의 해당 분야 기술적 전문성 및 수행 경험, 리스크 관리역량 등 * 유사 ODA사업 수행 경험 보유 여부, 해당 분야 기술 개발 경험 및 노하우 보유 여부, 현지어 구사 능력(전담 통역 인력 보유) 여부 등 O 수행 인력의 기술적 전문성 및 참여 규모의 적절성 * 전문 자격증 보유, 과업 대비 참여 인력 규모, 참여율의 적절성 여부		
	네트워크 관리역량(5)	o 수원국/국내 관련 기업, 협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및 현지 법인 보유 여부, 네트워크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		
사업 세부 이행 방안 (45)	수혜기업 발굴계획 적절성(10)	o 수혜기업 발굴 기준, 과정 등의 명확성 및 적절성 o 수혜기업 발굴 과정에서 현지 정부와의 협력 방안의 타당성		
	기술지도 계획 적정성(20)	<ul> <li>수혜기업의 기술지도 등을 위한 애로요인 분석의 적절성 및 구체성</li> <li>이 애로요인 분석에 따른 기술지도 계획 등의 구체성 및 타당성 * 해당 애로요인별 기술지도 계획 등</li> <li>이 기술지도를 위한 국내 '산업별 전문가단' 전문성, 구성· 운영의 적절성 및 구체성</li> </ul>		
	산업시찰· 파트너쉽 구축계획 적정성(10)	<ul><li>수원국 관계자, 수혜기업 담당자 등의 국내 산업시찰 계획의 필요성, 구체성, 적절성</li><li>다 기관과 협업하여, 추진될 파트너쉽 구체성 및 적절성</li></ul>		
	사후관리 (5)	o 사업의 성과발굴을 위한 사후관리 계획 등의 구체성 및 타당성 * 수원국의 지속 가능한 사후 운영 가능성, 전문가 확보 방안 등		
예산편성의 적정성 (5)		O 사업 목표 달성 및 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* 세부 운영 프로그램 간 예산편성 비중의 적정성 여부 O 소요 예산 산출 근거의 구체성 및 현실성 * 현지 물가 및 실정을 고려한 예산편성 여부 (예산 산출근거 증빙)		

<sup>\*</sup> 제시된 평가지표 및 배점, 항목은 추후 변동 가능

#### 4 유의사항

- 프로젝트사업의 사업계획서는 총수행기간 및 총사업비 대상으로 상세하게 작성
  - 동 사업 운영요령에 근거하여 수원국과 협의의사록(RoD)이 미체결 된 경우 본사업 착수가 원칙적으로 제한됨(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5조 참조)
    - < "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" 제5장 제25조(본사업 착수) >
- 제25조(본사업 착수) ① 장관은 제24조에 따라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후 기자재 및 시설물설치 공사 또는 건설공사 등 본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의사록 체결 이전에 본사업을 착수할 수 있으며상세 요건, 절차와 범위는 별표 6을 따른다.
  - ② 장관은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대상국과 협의하여 사업 일정 및 내용에 관한 조정, 사업 취소 등을 할 수 있다.
- 기도국에 지원되는 기자재는 국산 또는 국내기업이 제조한 장비를조달 · 도입하는 것을 권고함
  - \* 외산장비 조달 시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 및 장비별 "외산장비 조달 사유서" 별도 제출 필수
- ㅇ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 - 제출서류 양식으로 작성 제출하지 않은 경우
  -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, 허위로 작성된 경우
  - 공고마감일시까지 제출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
-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조정될 수 있음
  - 세부과제별 예산, 세부과제 개수, 사업 기간 등

#### IV

# 기타사항

ㅇ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콜센터)

온라인 접수 문의	전화번호		
e-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(민간보조사업자 "1번" →	÷ 4670.0505		
공모문의 "2번" 또는 회원가입 "3번" 선택 후 문의)	1670-9595		

ㅇ 공고 내용 등 사업 관련 문의 : KIAT\_ODA@kiat.or.kr

#### [ 각 사업별 담당자 ]

구분		No	공고명	<b>담당자</b> (전화번호)
산업 통상협력 개발지원 산업	프로젝트	1	우즈베키스탄 디지털제조기술센터 건립	이혁재 연구원 (02-6009-3953)
		2	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조성	허유진 연구원 (02-6009-3948)
		3	라오스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후관리	임지안 연구원 (02-6009-3945)
	TASK	1	스리랑카 섬유분야 생산기업 현장애로기술지도(TASK)	임지안 연구원 (02-6009-3945)
		2	베트남 전자전기분야 생산기업 현장애로기술지도(TASK)	허유진 연구원 (02-6009-3948)

#### [참고] 붙임 목록

#### □ 붙임 1. 프로젝트별 타당성조사 보고서

- 1-1. 우즈베키스탄 디지털제조기술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보고서
- 1-2. 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조성 타당성조사 보고서
- 1-3-1. 라오스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타당성조사보고서
- 1-3-2. 라오스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에너지타운 화재사고 원인분석 및 사후지원 추진계획(案) 보고서

#### □ 붙임 2. 관련 규정

- 2-1.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- 2-2.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2-3.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
- 2-4. 산업 및 에너지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

#### □ 붙임 3. 작성 양식

- 3-1. 사업계획서 양식
- 3-2. 사업계획서 필수 별첨자료 양식